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89호 2021. 9. 27.(월)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668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고성군 조례 제2669호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4
고성군 조례 제2670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고성군 조례 제2671호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훈 령

고성군 훈령 제469호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
--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1-1583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1-28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게시(마암지구)	40
고성군 고시 제2021-28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포지구)	43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9월 27일

고성군 조례 제2668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최하는 간담회,” 를 “개최하는”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20일” 을 “1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u>개최하는 간담회</u>,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p>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u>별지 서식</u>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u>20일</u>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개최하는</u> ----- ----- ----- -----.</p>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 ----- ----- ----- <u>별지</u> <u>제1호서식</u>----- ----- <u>10일</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9월 27일

고성군 조례 제2669호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복지 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예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9월 27일

고성군 조례 제2670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판매대행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로, “판매대행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준”을 “말 기준”으로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가맹점 등록)”을 “(가맹점 등록 및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② (생 략)</p> <p>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말 기준-----</p>
<p>제6조(가맹점 등록) ① (생 략)</p> <p>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p> <p><신 설></p>	<p>제6조(가맹점 등록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다 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p><신 설></p>	<p><u>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u></p>
<p><신 설></p>	<p>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p>
<p><신 설></p>	<p>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p> <p>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p> <p>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p> <p>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조직</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생략)</p>	<p>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p>
<p>제13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삭 제></p>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9월 27일

고성군 조례 제2671호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 7.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같음하여 군수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8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를 “제7조” 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중 “제7조” 를 “제9조”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4항 중 “제8조” 를 “제10조” 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장부형서류” 를 “장부·서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단독주택 등</u>”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p> <p>6. “<u>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u>”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p> <p>7. “<u>경제성 미달지역</u>”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보조대상)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u></p> <p>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p>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

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
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
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
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같음하여
군수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에게 사
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신
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
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
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는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
려하여 지원대상 구간을 별도로 선정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 명칭 및 주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1. ~ 4.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 · 제10조 (생략)

제11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제7조-----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보조금의 결정통지) ----- 제9조-----

-----.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3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0조-----.

제12조 (생 략)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형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5조(감독) -----

----- 장부 · 서류 -----

-----.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삭 제>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2021.9.27.)

(앞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공급요청	시 점			
구간주소	중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	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 정보 취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 10px 0;">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div> 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고성군수 귀하 </div>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3.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자 세부내역			

■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27.)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	
공급관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도별	단독 주택용 :	세대
				다세대·연립주택:	세대
				그 밖의 세대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신 청 액	금 원			
	사 업 비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 : 원 • 투자비 : 원 • 주민부담 : 원 중(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표기) • 보조금 : 원 			
<p>「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서명 또는 인)</p> <p>고성군수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9월 27일

고성군 훈령 제469호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고”를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시 공고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5. 1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9조제2호 중 “1통”을 “1통(필요시)”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사) ① · ② (생 략)</p> <p>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당 <u>해연도</u>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u>관리부서</u>의 장은 수시로 심사하여 채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5조(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해당 연도</u> ----- ----- -----.</p>
<p>제8조(채용절차)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u>공고</u>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u>공고절차</u>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8조(채용절차) ① ----- ----- ----- <u>공고</u>하여하 <u>며, 재공고시 공고기간은 3일 이상--</u> <u>-.</u> <u>다만</u>----- -----.</p>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② ~ ⑤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u></p> <p>5. <u>1개월 미만의 일시·간헐적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u>1통</u></p> <p>3. 4. (생 략)</p>	<p>제9조(채용 구비서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통(필요시)</u></p> <p>3. 4. (현행과 같음)</p>

고성군 공고 제2021-1583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27.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20. 8. 24.)」 개정사항 조례 반영
- 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배출무게 상한 제한으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 라.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취소 신고서 제정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등 읍·면 업무관리 개선(제8조제2호, 안 제8조제2 의2호, 안 별지 제6호, 안 별지 제7호 서식)
-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규정(제8조제5호, 안 별표5)
- 다. 100리터 무게제한을 삭제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상한 제한(제8조제6호)
-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규정 중 불합리한 조항 및 중복 내용 삭제(제12조 및 제12조의3)
- 마.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안 제14조의 2)
- 비. 100리터 종량제봉투 용량 삭제(별표2,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환경과
- 2) 전화: (055)670-2422 ~ 24, 팩스: (055) 670-2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 (전화 055-670-2422 ~ 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날로” 를 “날” 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타시설” 을 “그 밖의 시설” 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사전” 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 상태별” 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품목별”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을 “75리터는 19킬로그램” 으로 한다.

2의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을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으로, “있다” 를 “있으며,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 할 수 있다.

별표 2 중 100 l 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100 l 란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날----- -----.</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긴급조치 등 기타시설</p> <p>④·⑤ (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그 밖의 시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고성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 ----- ----- ----- -----</p>

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 결제를 통하여 징수한다.

<신 설>

3. 4. (생 략)

5.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④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

-----.

-----.

2의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수 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품 목별-----
-----.

6. -----

75리터는 19킬로그램 -----
-----.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 있으며,

다.

제12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 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삭 제>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 할 수 있다.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행)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용량	일반용봉투가격		
	공 급 가 격	판매수수료	판 매 가 격
5 ℓ	90	10	100
10 ℓ	185	15	200
20 ℓ	370	30	400
30 ℓ	550	50	600
50 ℓ	940	60	1,000
75 ℓ	1,410	90	1,500
100 ℓ	1,880	120	2,000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용량	일반용봉투가격		
	공 급 가 격	판매수수료	판 매 가 격
5 ℓ	90	10	100
10 ℓ	185	15	200
20 ℓ	370	30	400
30 ℓ	550	50	600
50 ℓ	940	60	1,000
75 ℓ	1,410	90	1,500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

봉투용량	용 도	비 고
5 l	일반용	
10 l	일반용, 재사용	
20 l	일반용, 재사용	
30 l	일반용, 재사용	
50 l	일반용, 공공용	
75 l	일반용	
100 l	일반용	

비고 : 종량제봉투 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안)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

봉투용량	용 도	비 고
5 l	일반용	
10 l	일반용, 재사용	
20 l	일반용, 재사용	
30 l	일반용, 재사용	
50 l	일반용, 공공용	
75 l	일반용	

비고 : 종량제봉투 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 (신설)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나.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별도 분리배출
다.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HDPE, LDPE, PET, PP, PS)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깨끗한 상태로 배출 -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묶어 배출 - 다른 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라.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마.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그 밖의 의류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바.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배출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출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사.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아. 유리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 잡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도자기, 사기그릇 제외)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자.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차.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 함유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지지 않은 형광등만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또는 두꺼운 종이로 감싸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 비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환경과장 최 정 란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9.11.26>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2020. 8. 24.)

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9. 4. 8.)

1.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P12~P13)

2.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환경부 '20. 12.) ㉞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 21년)
 - * ▲업소용 既사용 제한(' 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1-28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24.

고 성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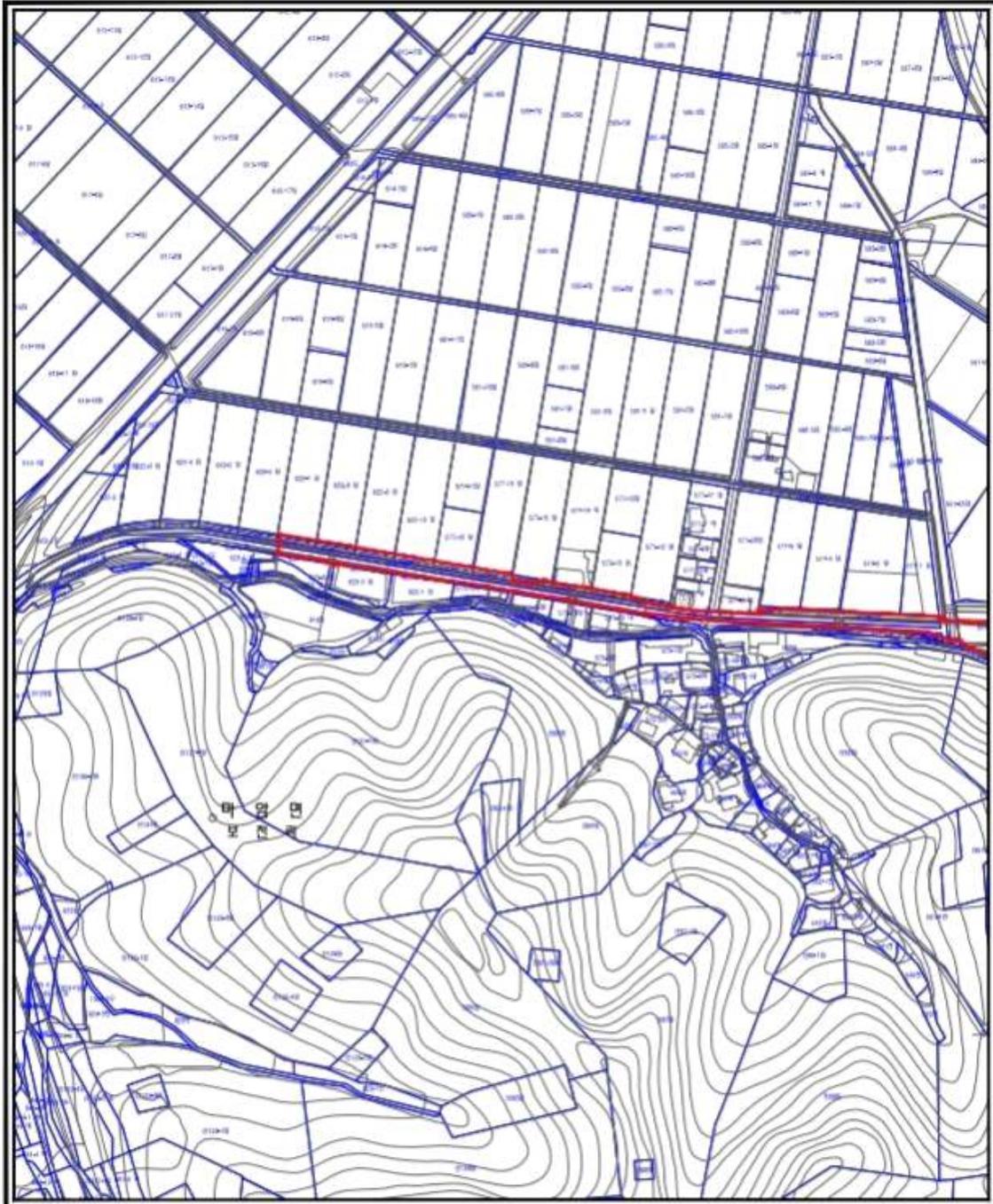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마암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551-3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나	26,405	침수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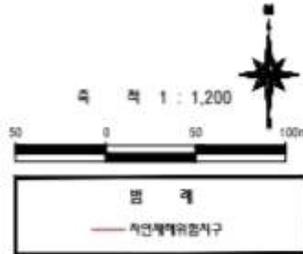
2. 지정기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때 까지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따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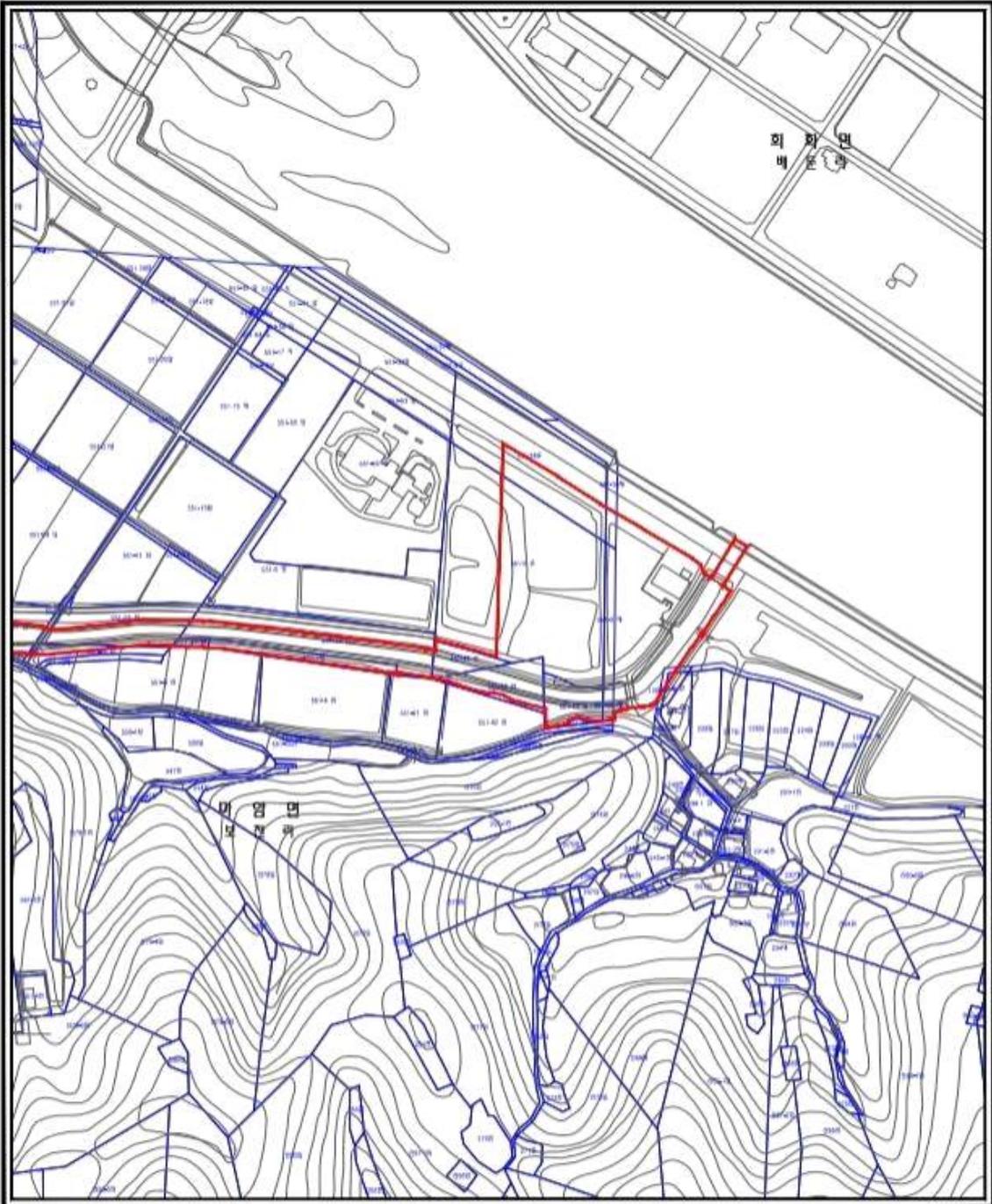
마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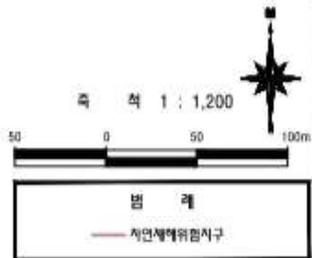
- 행정구역 : 경남 고성군
- 지정권자 : 고 성 군 수
- 지정일자 : 2021년 9월 24일
- 고시일자 : 2021년 9월 24일
- 고시번호 : 제2021-283호(2021년 9월 24일)
- 작 성 자 : 경남 고성군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고 성 군 수



마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2/2)



- ▣ 행정구역 : 경남 고성군
- ▣ 지정권자 : 고 성 군 수
- ▣ 지정일자 : 2021년 9월 24일
- ▣ 고시일자 : 2021년 9월 24일
- ▣ 고시번호 : 제2021-283호(2021년 9월 24일)
- ▣ 작 성 자 : 경남 고성군
-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 ▣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 고 성 군 수



고성군 고시 제2021-28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24.

고 성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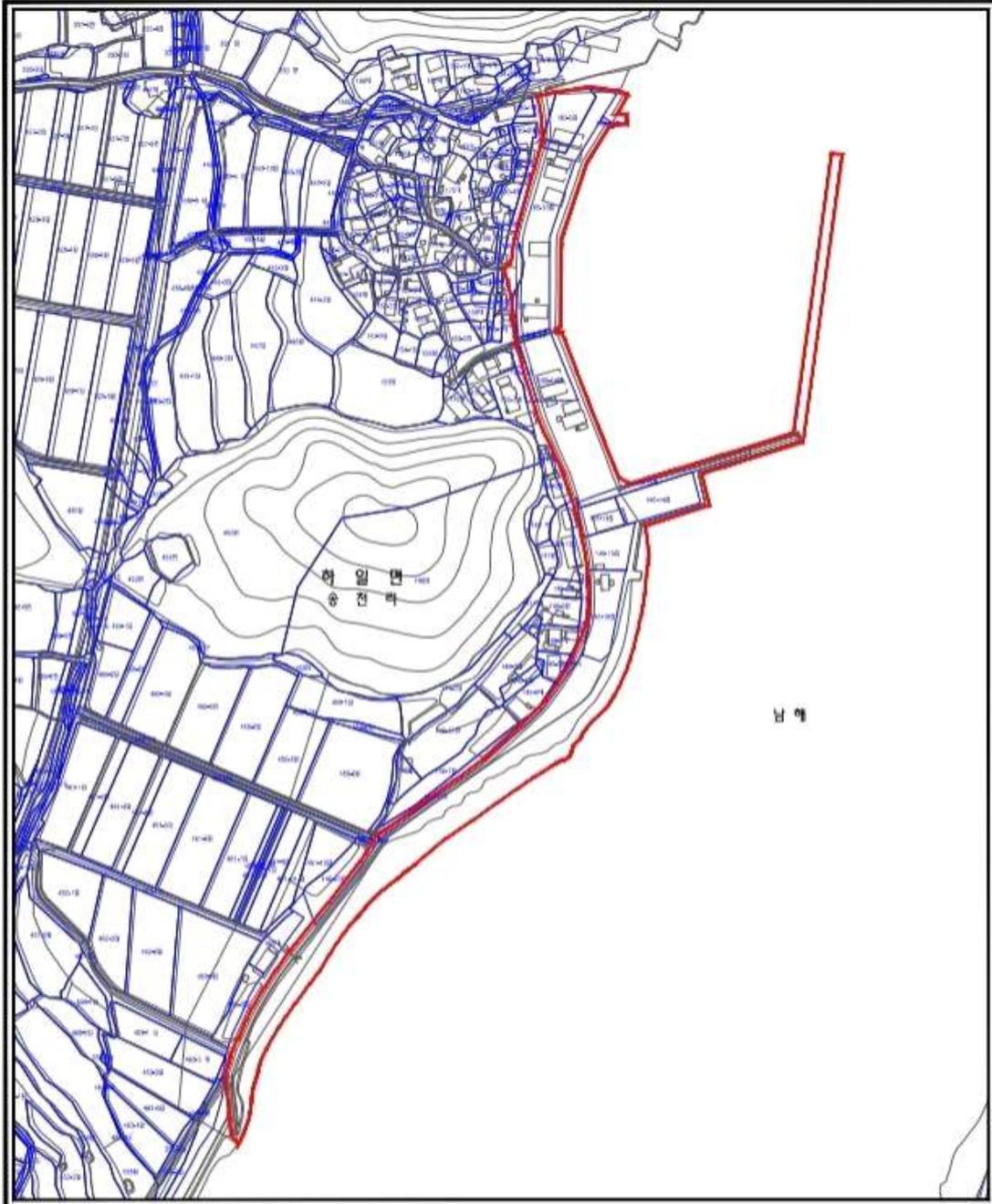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²)		
지포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46-8번지 일원	해일 위험 지구	가	25,272	해일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신규

2. 지정기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때 까지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따로붙임)

지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도면



- 행정구역 : 경남 고성군
- 지정권자 : 고 성 군 수
- 지정일자 : 2021년 9월 24일
- 고시일자 : 2021년 9월 24일
- 고시번호 : 개2021-284호(2021년 9월 24일)
- 작 성 자 : 경남 고성군
- 작성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 고 성 군 수

